옥천군 공고 제2021-1291호

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주차장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1년 11월 19일

옥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무료주차시간을 변경 연장하고, 월 정기권 요금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유료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이면도로 주차를 줄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주차요금 및 가산금 수정 (안 제3조제3항제1호)

○ (별표 1)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수정

4. 의견제출

○ 「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1년 12월 9일까지**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도시교통과장)에게 전자우편,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

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자우편(이메일) :kangeg83@korea.kr

전화 : 043)730-3535, FAX : (043)731-3243

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5. 붙임

○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○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1시간”을 각각 “1시간 30분”으로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 1〕

공 영 주 차 장 주 차 요 금 표 (제3조제1항 관련)

구 분	1 회 주 차 권		1일주차 (노상주차장 제외)
	최초1시간30분 까지	1시간30분 초과후 30분마다	
주 간 (08:00~19:00)	무 료	500원	7,000원
월 정기권	40,000원		
야 간 (19:00~익일 08:00)	무 료		

1. 상기 요금은 승용차, 15인승미만 승합, 2.5톤미만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. 다만,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가. 15인승이상 45인승미만 승합, 2.5톤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: 기준 요금의 2배

나. 45인승이상 승합, 11톤 이상의 화물 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: 기준 요금의 3배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·②(생 략) ③(생 략) 1. 제8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 요금에 그 주차 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. 2. 3.(생 략) ④·⑤(생 략)	제3조(주차요금 및 가산금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 1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1시간 30분------- ---------- 1시간 30분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2. 3.(현행과 같음) ④·⑤(현행과 같음)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　례　명 :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□ 성명(단체명):
□ 주　　소:
□ 전 화 번 호:

조 례 안	의　　견